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2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 박대출·김상훈·엄태영

김미애 • 박성민 • 조배숙

이종욱・강승규・구자근

이인선 · 김기현 · 유상현

나경원 · 송석준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.

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,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.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,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.

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

2 신설)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탄핵심판비용의 특례) 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(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판의 수행을 위해소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심판수행비용"이라 한다)을 보상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있다.

- 1. 제25조제3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
- 2.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비용 중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부분
- 3. 그 밖에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
- ②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수행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과 탄핵소추를 발의한 무소속 국회의원(이하 이 조에서 "비용부

담자"라 한다)이 부담한다. 비용부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.

- 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자가 심판수행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④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심판수행비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.
- 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. 심판수행비용의 보상 범위, 보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핵심판의 심판수행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종국결정) ① (생 략)	제36조(종국결정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	
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	
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	
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6</u> .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
	보상에 관한 사항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7조의2(탄핵심판비용의 특례)
	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
	구를 각하 또는 기각(제53조제
	2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제외한
	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
	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
	은 심판의 수행을 위해 소요한
	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
	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심
	<u>판수행비용"이라 한다)을 보상</u>
	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
	구할 수 있다.
	1. 제25조제3항에 따라 선임한

대리인의 보수

- 2.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

 거조사 비용 중 피청구인이

 부담하는 부분
- 3. 그 밖에 헌법재판소 규칙으 로 정하는 비용
- ②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수행비용은 헌법재 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 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국회 의원이 소속한 정당과 탄핵소 추를 발의한 무소속 국회의원 (이하 이 조에서 "비용부담자" 라 한다)이 부담한다. 비용부담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부 담한다.
- 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 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자가 심판수행비용을 부담 한다는 내용을 결정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.
- ④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심판수행비

<u>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야</u> 한다.

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. 심판수행비용의 보상 범위, 보상 절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 로 정한다.